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35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 의 자 : 김병기 · 이병진 · 박상혁
박선원 · 조계원 · 이기현
문진석 · 김현정 · 백승아
오세희 · 김동아 · 박홍배
조인철 · 허영 · 이상식
김문수 · 최혁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권 교체 시점마다 전임 정부에 임명된 임원들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기존 임원과 신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정부와의 업무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해진 임기에 따라 직을 유지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공공기관

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달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1 차례만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의 경우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 임기가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함(안 제28조).

나. 기관장의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을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3항, 제4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를 “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될”을 “한차례만 연임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의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계약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7항”을 “제31조제6항·제7항”으로,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정책방향에 기반한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① 공기업·준

정부기관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평가 결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 -----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생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	⑥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3항, 제46조의2제3항----- ----- ----- -----

지 아니한다.

⑦ (생략)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 3. (생략)

<신설>

③·④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임기) ① -----
-----임원
의-----.

-----.

② -----
-----한차례만 연임
될-----.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단서 신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
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
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과 같음)

⑥ -----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의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
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
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결
과 계약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
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
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
다.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① -----

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6항·제7항-----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3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정책방향에 기반한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기업·준정

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